

청주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202781(본소), 2017가합202798(반소)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매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총청 담당변호사 민경철, 윤종락

四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김정태

변론 종결 2018. 6. 15.

판결 선고 2018. 7.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1. 10.까지는 연 5%, 2017. 1.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01,737,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공주시 C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던 원고는 2012. 6. 19.경 공주시에 C시설 내에 있는 건조기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2012. 6. 26. 공주시로부터 C시설 내에 원고가 제공하는 고온압착벨트 건조기(슬러지 함수율 80% → 30%)의 임시설치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슬러지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탈취기를 제조하는 피고와 업무협력 양해각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7.부터 2013. 3. 29.까지 사이에 공주시 C시설 내에 원고가 마련한 고온압착벨트 건조기, 피고가 제공한 탈취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그러나 공주시는 2013. 6. 19. 위 시설을 철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시설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7. 29. 피고에게 위 고온압착벨트 건조기(부대시설 포함, 이하 '이 사건건조기'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계약 후 7일 이내, 잔금 1억 원계약 후 30개월 이내

지불)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조기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조기를 재구매 또는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탈취기를 여러 대 판매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일부 기재나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1호증에 의하더라도 '재설치 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받으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확인서의 작성자인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재매수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자신에게는 그러한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만으로는 그 항변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원고는 공주시와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이 사건 건조기를 공주시 C시설에 설치하여 피고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조기의 성능 미달 등으로 인해 결국 이를 철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탈취기 제작비용 및 철거비용 합계 201,737,83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또한

반소로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 제1항에 '갑(원고를 뜻한다)은 본 양해각서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악취탈취시설이 필요한 공주시 C시설의 고온압착벨트건조기 및 부대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공주시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 3항에 원고와 피고가 위 시설을 2년 동안 활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공주시는 시설 설치 시작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6. 19. 원고에게 '처리량이 부족하고, 외부 위탁처리에 비해 비용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며, 동절기에 응축수 발생으로 인한 벨트 손상우려가 있고, 악취가 발생되어 탈취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며, 빈번한 고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위 시설의 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이 사건 양해각서는 개발단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가 기술을 완성하여 특허 및 신기술을 획득함으로써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양해각서제1조)되었으므로, 양해각서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건조기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활용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신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을 활용할 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시설의 기능 결함의 문제로 공주시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연구기회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2 공주시에서 시설철거를 요구한 이유 중 하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인데, 이 사건 양해각서 제10조 제1항에 '을(피고를 뜻한다)은 완벽한 복합악취탈취시설을 설치한다. 단 성능이 미흡하여 공주하수처리장에 복합악취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경우는 을이 책임지고 복합악취탈취시설을 보완토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2016. 1. 30.부터 소장 부분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1.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김택우, 판사 곽여산